

제270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4. 2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4월 24일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20 - 27
- 나. 제 출 자 : 강선영 의원 외 6명
- 다.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3일
- 라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20일

2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여가 생활 및 평생교육 진흥, 마을공동체 형성 등 지역공동체 활동을 증진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구민에게 공공시설 등의 개방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,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의 편의 제공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공공시설, 개방공간, 구민 등, 단체, 이용, 이용자, 사용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4조)

- 마.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의 방향과 범위를 규정함(안 제5조~제6조)
- 바. 공공시설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격에 대해 규정함
(안 제7조)
- 사. 이용신청 및 허가, 이용취소 및 제한 등 이용관련 사항을 규정함
(안 제8조~제9조)
- 아. 사용료 부과, 징수, 반환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~제11조)
- 자. 이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함(안 제12조~제13조)
- 차. 회계관련 규정 준용에 대해 규정함(안 제14조)
- 카.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

나. 협조부서: 자치행정과

다. 입법예고(2020. 4. 14. ~ 4. 19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- 유희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직장인과 청소년 등 주민이 야간 및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, 마을공동체 형성,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

나. 주요 내용

-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조례를 따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함으로 기본적인 조례로써의 역할을 부여하였으며, 현재 별도 조례로써 운영 중인 자치회관 및 문화시설(허준박물관, 겸재 정선미술관 등), 강서구민회관 등의 시설의 경우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(안 제4조)
- 구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,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6조)
- 개방공간 이용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구에 소재하는 직장, 학교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하는 단체 등에게 자격을 부여함(안 제7조)
- 이용신청 및 허가 사항과 취소,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시설이용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불가항력의 경우 등 반환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함(안 제13조)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리구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,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(사용수익허가)제1항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나
- 다만, 집행부의 개방공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관리비용 발생 시 이에 대한 지원인력 및 예산확보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2조(사용·수익허가)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
2.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